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e Change of Financial Industrial for strengthening Global Financial Control

함형범(Hyung-Bum Ham)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주최자(hbham@skuniv.ac.kr)

최창열(Chang-Youl Choi)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대우교수
교신저자(ccy666@skuniv.ac.kr)

목 차

I. 서 론(안)	V. 결 론(안)
II. 글로벌 금융위기	<참고문헌>
III. 선행연구 및 연구모형	<Abstract>
IV. 실증분석(안)	

국문초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바젤 III 등 새로운 금융규제가 제시되었다. 이들 제도는 중장기 금융산업의 경영과 구조변화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모델의 재검토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금융규제의 방향은 규제의 범위 확대, 글로벌 규제자본체계 도입, 글로벌 유동성 도입 등이다. 계량적 지표로는 바젤감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계량영향평가(QIS)가 있으며, 법리적 관점에서는 이행시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및 상품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따른 준수여부가 중요한데, 은행을 중심으로 부정적 시간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금융선진국들의 규제강화에 대한 소극적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선후진국간 차등적 규제, 금융산업에 대한 이원적 규제, 선진국의 동참 등이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선결될 요건일 것이다.

주제어 : 금융위기, 국제금융규제, 금융정책, 금융과 무역, 금융구조

* 본 연구는 2012학년도 서경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I. 서론

2008년 9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시작으로 대형 금융기관들의 연쇄파산을 통해 세계경제의 모습을 바꾸어 놓은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 시장의 침체를 몰고 왔으며,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주었다. 1978년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한 고유의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시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평균 10%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하면서 현재는 유럽 강대국과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함께 양강 체제를 구축하며 경제대국과 군사강국이 되었다. 중국의 부상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금융정책 운용에 있어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중시함에 따라 금리자유화, 국가 간 자금이동의 자유화, 자금조달 및 운용 면에 있어서의 증권화 등 금융규제의 완화 및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은행간 경쟁이 심화되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고위험, 고수익 중심의 자산운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공여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외거래(off-balance sheet transaction)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은행이 부담하는 잠재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하였으며, 금융산업(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선진국 감독당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은행 자기자본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1988년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제정하였다. 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제고 및 은행간 경쟁조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를 중심으로 현행 자본규제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논의를 거듭하였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의 승인을 거쳐 2010년 12월 바젤 III 기준서가 발표되었다. 새로운 금융규제는 중장기 금융산업의 경영과 구조변화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들은 바젤 III 등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모델의 재검토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및 전략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국가별 금융규제의 동향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개편된 자본규제체계인 바젤Ⅲ의 도입동향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회원국 27개 국가 중 11개국만 바젤Ⅲ 시행시기를 확정하였다. 그러나 2013년 4월 기준으로 23개 회원국이 시행시기를 확정하였다. 이로써 바젤Ⅲ에서 규정하였던 자본관련 규제를 2013년까지 도입하겠다는 각국의 합의가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행시기를 확정된 국가 중 EU를 제외한 여타 회원국들은 2013년 중 시행할 것으로 나타났고, 싱가포르 등 10개국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일본은 2013년 3월부터 시행, 인도는 2013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러시아, 브라질은 2013년 10월이 시행예정, EU(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웨덴)는 2014년 1월 시행예정이다.¹⁾ 마지막으로 한국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당국의 정책발표가 있어 우리나라도 바젤Ⅲ 자본규제관련부문 시행에 맞춰 은행업감독규칙 등이 개정될 예정에 있다. 27개국 중 인도네시아, 터키, 미국 3개국이 바젤Ⅲ 자본관련규제 도입에 있어 미확정상태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바젤Ⅲ규제는 자본관련부문에 한정되며, 레버리지비율규제와 유동성규제는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절에서는 바젤Ⅲ협약 또는 바젤Ⅲ와 관련된 금융 산업의 규제와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²⁾

1. 미국

바젤Ⅲ도입이 아직 미확정(2013년 말까지 시행할 예정)인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최근의 글로벌금융위기를 직접 겪은 국가로서, 위기이후 금융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Dodd-Frank 법(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금융개혁법)이 마련되었다. 금융개혁법은 금융시스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대마불사를 종식시키며 구제금융 종결을 통해 미국 납세자를 보호하고, 부적절한 금융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회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따르면 이번 금융개혁법의 목적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자산거품을 예방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³⁾

1) BIS, Basel Committee concludes assessment of Basel III capital regulations in Singapore(2013), <http://www.bis.org/press/p130320.htm>

2) 공감코리아 정책정보, '2013.12.1일부터 국내은행에 바젤Ⅲ 중 자본규제 시행', 2013.5.31.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98552>

3) 배준석, 미국의 금융개혁법이 한국의 금융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2010), p.6

금융개혁법의 주요내용으로 금융안정감독위원회의 설치, 금융회사에 대한 강제청산 절차, 저축은행감독청의 폐지와 그 권한의 이전, 투자자문업자의 규제 강화, 보험개혁 및 연방보험사무소, 볼커룰과 은행규제,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의 개선, 지급청산결제 절차의 개선, 투자자보호 및 증권규제의 개선,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금융소비자 보호청, 연준시스템 개선,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의 개선, 공적자금의 회수 및 사용처, 모기지 개혁 및 약탈대출금지법 등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특히 금융개혁법의 6장 Volker Rule에 관한 내용은 부보예금 취급기관 및 관련회사의 위험투자 금지, 비은행금융회사의 위험투자제한, 금융회사의 대형화 규제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미국의 대형금융회사들이 위험투자 행위의 결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었고, 최근 위험투자비중이 확대되면서 시스템리스크 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대형금융회사의 경우 대마불사와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므로 볼커룰에서는 금융회사의 대형화 또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볼커룰이 미국에서만 시행될 경우 미국 금융회사에게만 불리(규제차익과 같은)하므로 미국은 볼커룰의 국제적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⁵⁾ 그러나 국가 별로 연혁적인 배경, 정치적 문화적인 배경이 각각 상이한 만큼 일괄적인 한 국가의 규제를 강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한다. 다만 미국이 세계경제의 영향력이 큰 국가인 만큼 미국의 금융개혁법에 따른 금융산업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본다.⁶⁾

볼커룰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은행 및 은행계 증권사의 트레이딩 계정거래가 금지되며, 기타 증권사의 트레이딩 계정거래에 대해서도 거래 한도와 자본적립 의무가 부과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외지점과 은행계 증권사의 수익성은 상당히 악화될 전망이지만, 위험투자의 제한에 따른 수익 변동성완화로 부도위험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볼커룰이 미국 단독으로 규제의 기준이 된다면 규제차익거래와 같은 금융산업 상의 불이익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볼커룰이 미국이 제안한 대로 국제적기준으로 도입된다면 단기자금유입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외환 건전성 사정이 개선될 것이며, 시스템리스크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처럼 볼커룰을 포함한 금융개혁법은 미국이 글로벌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만큼 다시는 위기를 재발하지 않고, 금융산업의 규제와 감독에 힘쓰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⁷⁾

4) 김홍기, 미국 도드-프랭크법의 주요내용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금융법연구 제7권 제2호(2010), p. 49-50.

5) 서병호, 볼커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2010), p. 2.

6)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기 이후의 글로벌 금융규제, Issue Paper(2010), p.46.

7) 서병호, 볼커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2010), p. 3.

2. 영국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2007년 Northern Rock에서 대량인출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를 토대로 영국 금융감독체제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금융감독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은행법(Banking Act 2009)을 개정하고 이와 더불어 The Turner review⁸⁾를 기반으로 한 금융시장 개혁안을 발표했다.⁹⁾ 이 개혁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의 미비 또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기관의 감독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감독기관 간의 공조를 이전보다 공고히 하는 내용, 감독기관에 특별정리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보상설계 강화, 기존의 FSA를 2012년 이후 FCA와 PRA로 영란은행의 산하기관에 둬으로써 영란은행의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그동안 금융감독체제의 허점에 대해 극복하고자 한 노력이 엿보인다.¹⁰⁾ 특히 영란은행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강화는 최근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법제화함에 따라 가속화되었다. 2012년 3월 영란은행은 FPC가 PRA 및 FCA에 대해 지시권으로 사용할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경기 대응완충자본, 부분별 자본규제, 레버리지비율을 선정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¹¹⁾

Turner Review에서부터 시작된 영국의 금융감독체제 개편 법률 The Financial Services Bill¹²⁾은 경기대응완충자본, 부분별 자본규제, 레버리지비율선정은 바젤Ⅲ 협약의 주요 내용에 부합한다. 여기에 더하여 영국의 금융위기 또한 미국의 금융위기와 비슷하게 모기지대출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하다가 2007년 주택시장 붕괴 이후 국제수지적자와 함께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위기의 주요원인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요구에 따라 The Financial Services Bill에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었다. 우선 LTV·LTI와 같이 주택담보 대출의 부실 발생시 금융기관의 손실을 줄이는 한편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주택 가격 또는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비례하여 모기지 금액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또한 증거금규제에 따라 시장상황에 따라 증거금이 급변동하여 시스템리스크로 발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 또는 고객에 대한 파생상품 거래 및 담보부자금조달 등에 적용되는 최소 증거금이나 헤어컷을 변경하도록 했다.¹³⁾ 그 외 이처럼 영국도 금융산업의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의 방임을 주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8) <http://www.bankofengland.co.uk/publications/Documents/speeches/2009/speech384.pdf>

9) 성태윤 박기영 박단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미 금융감독체제의 변화', 한국경제의분석 제18권1호(2012), p.9.

10) 성태윤 박기영 박단비, 전계서, p.16.

11) 한국은행, 영란은행의 거시건전성수단, 한국은행런던사무소(2012), p. 3-4.

12) 영국 재무부는 금융감독체제 개편 법안인 'The Financial Services Bill'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2012.1.27) 한국은행, 영란은행의 거시건전성수단, 한국은행런던사무소(2012), p.2.

13) 한국은행, 영란은행의 거시건전성수단, 한국은행런던사무소(2012), p. 7.

금융규제에 관한 법률을 입회시키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제인 바젤Ⅲ에 동참할 뜻을 밝혔으며, 2014년 1월 1일 도입예정에 있다.¹⁴⁾

3. EU

유로존 국가들도 EU차원의 금융감독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개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2008년 11월 EU집행위원회 내 고위자문그룹에서 유럽 금융시스템의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제안하면서, 범유럽 차원의 새로운 감독기구 창설에 합의하였다. 범유럽차원의 거시건전성 감독기구인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Board, ESRB)신설, 범유럽 미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유럽금융감독시스템(European Systemic of Financial supervisors, ESFS)을 구축함에 따라 거시건전성과 미시건전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⁵⁾

유럽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ESRB는 거시건전성 감독을 ESFS는 미시건전성을 각각 감독한다. ESFS가 ESRB에 미시건전성 정보를 제공하고, ESRB는 감독기구에 리스크 조기경보 및 대응조치를 권고하는 등 두 기구는 상호연계성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체계이다. ESRB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일반이사회(General Board)와 의사일정 조정 및 의사결정 지원기구로서 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이사회는 ECB일반위원회에서 선출한 의장, 부의장, 27개국 회원국 중앙은행총재, ECB총재, 은행보험증권업 등 업종별 감독청 의장, EU집행위원회 대표, 금융위원회의장, 각 회원국 금융감독기구 대표로 구성된다. 단 금융위원회의장과 각 회원국 금융감독기구 대표는 투표권이 없다. 조정위원회는 의사일정 조정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의장으로 ESRB의장이 역임하고 부의장, 2명의 중앙은행총재, 은행보험증권업 등 업종별 감독청 의장, EU집행위원회 대표, 금융위원회 의장으로 구성된다. 2명의 중앙은행 총재는 유로존, 비유로존 출신 각 1인으로 구성된다.

ESFS는 ESRB의 조정위원회가 맡아서 구성을 이루게 되므로 ESFS는 ESRB의 미시건전성 정보 제공을 위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난다. EU 또한 글로벌금융위기 및 동유럽재정위기로 금융산업 및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탓에 EU는 현재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을 2013년이 아닌 내년 2014년 1월 1일에 도입할 예정에 있다.

14) 바젤Ⅲ의 자본규제부문도입에 관한 정부 보도자료참고.(2013.5.30)

15) 바젤Ⅲ의 자본규제부문도입에 관한 정부 보도자료참고. (2013.5.30)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6806&no=9680&s_title=&s_kind=&page=3dptj

Ⅲ. 글로벌 금융규제의 내용

1970년대 중반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금융정책 운용에 있어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중시함에 따라 금리자유화, 국가 간 자금이동의 자유화, 자금조달 및 운용 면에 있어서의 증권화 등 금융규제의 완화 및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는데, 은행들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위주의 자산운용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자산의 질이 저하되었으며, 자금공여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외거래(off-balance sheet transaction)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잠재적 리스크도 증가하였다. 또한 국가 간 자본이동의 자유화에 따른 환율변동리스크 및 국가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도 심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진국의 감독당국은 은행 자기자본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하였다. 그 결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f Banking Supervision: BCBS, 이하 바젤위원회4)는 1988년 7월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제고 및 은행들 간 경쟁조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6년 1월에는 기존 신용리스크 이외에 1990년대에 들어와 크게 증가한 시장리스크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규제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1997년 말부터 바젤위원회 회원국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1998년 확정된 BIS협약은 신용도가 상이한 기업들에 대해 획일적인 위험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인해 리스크에 민감하지 못하였으며, 은행들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규제자본회피거래(regulatory capital arbitrage)를 하는 경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1996년부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자기자본규제안(신BIS협약, 일명 “바젤Ⅱ”)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2004년 6월 최종 규제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2008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바젤Ⅱ는 기존 협약에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1),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2), 시장규율(Pillar 3)을 추가한 3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Pillar 1에서는 은행이 스스로 신용·운영 및 시장리스크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을 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신용리스크 측정에 필요한 리스크 요소(risk factor)⁵⁾인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부도 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 부도 시 익스포져(EAD: exposure at default)에 대한 요건을 표준방법, 기본내부등급법, 고급내부등급법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2007년 여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자유화와 규제완화의 원칙에 기반한 기존의 금융규제체계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기존의 금융규제체계로는 급격한 금융혁신과 과도한 위험추구로부터 비롯되는 시스템적 불안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각성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의 새로운 최고 논의기구로 등장한 G20은 금융규제 개혁을 핵심의제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G20은 2008년 11월 정상회의에서 금융규제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은행부문에 대한 규제강화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은행 규제자본의 질적·양적 강화 및 과도한 레버리지 억제에 대한 국제기준을 2010년 말까지 마련하고, 금융상황 개선 및 경제회복 정도를 고려하여 2012년 말까지 이를 도입토록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¹⁶⁾

바젤Ⅲ은 기존의 자본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다수의 새로운 감독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바젤Ⅲ 규제개혁 내용은 크게 미시건전성 감독체계와 거시건전성 감독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미시건전성 감독체계는 규제자본의 질적·양적 강화, 규제자본의 위험인식 범위 확대,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도입, 글로벌 유동성 기준 도입, 감독·리스크관리 및 공시의 강화 등을 포함한다. 거시건전성 감독체계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도입,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다.

1.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 방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향후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고심하였다. 한국은 IMF외환위기를 몸소 겪었고, 2009년 3월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¹²⁴⁾,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신규 회원국으로 진출한 바 향후 국제금융질서 개편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바젤Ⅲ협약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바젤Ⅲ협약 논의와 합의 이전에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국제금융기구는 글로벌금융위기의 재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거쳤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바젤Ⅲ도입추진 이전 정부기관의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 방안으로 (1) 건전성 규제개선, (2) 규제범위의 확대, (3) 금융하부구조개선, (4) 국제협력강화, (5)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개편 등이 있다. 특히 (1) 건전성 규제 개선은 주로 바젤Ⅲ협약의 주요내용의 큰 틀과 일치한다.

16)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BCBS의 금융규제 개혁 보고서”, 보도자료, 2010.10.

(1)건전성규제 개선 부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1)-1은 자기자본 정의에 있어 만기의 영구성 및 손실흡수력 등 자본성 판단기준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신속히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본의 손실흡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자본요구량을 핵심자본(Tier 1과 같은)중심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완충자본(capital buffer)제도의 도입으로 완충자본은 최저자본 요구량을 초과하여 적립된 자본으로 경기순응성완화에 강력한 효과가 있다. (1)-2는 금융불안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위기시 사용가능한 유동성 완충장치(liquidity buffer)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대비율 등 핵심자본조달 비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3 위험기준 자본 요구 외에 총레버리지비율(gross leverage ratio) 등 전체 레버리지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2) 규제범위확대 부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2)-1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유동성 규제요건의 강화, 최고 레버리지 비율의 설정, 우발채무에 대한 제한, 재무재표상 단기 부채 비율에 대한 상한 설정 등 규제수준을 강화한다. (2)-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보험회사 및 투자은행(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이하 SIFI)에 대해 통합적 건전성 규제 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3 Shadow banking system에 대한 규제 강화부문으로 헤지펀드, 투자은행, 장부의 거래 등 시스템적 영향을 미치는 shadow banking system에 까지 규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헤지펀드 및 동 관리자를 등록하도록 하여 시장규율 및 거래상대방 규율을 강화하고 규제당국 및 중앙은행에 헤지펀드의 활동과 관련한 광범

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한다. (2)-4 한국을 포함한 G20국가들은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을 2012년까지 중앙청산소를 통해 의무적으로 청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 Party, CCP)를 이용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규제 자본을 무겁게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3)금융하부구조 개선부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3)-1 보수체계를 관리하는 보상위원회를 마련하여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상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상체계와 리스크관리를 연계하며, 특히 장기적성과에 주안점을 두는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3)-2 베어스텐스, 리먼브라더스 등의 파산경험에 비추어 볼 때 SIFI의 에 대해서도 은행과 유사한 정리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한 다국적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각국의 파산법 등의 상이로 인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3)-4 리스크관리부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 국제협력강화 부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4)-1 금융안정화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은 거시건전성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위기 방지, 시스템적 취약성 모니터링 등 위기의

사전경고 및 금융위기 발생시 위기관리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IMF는 현행 거시경제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적 취약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국제적 조기경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4)-2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적 규제 감독체계의 부재도 글로벌금융위기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므로 공동감시단이용 등 국제공조 강화와 진출국 감독기관의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감독당국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5)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개편 부문을 살펴보면, (5)-1 국제 기준에 의한 규제체계 모델의 선택시에는 각국은 기관설립에 관한 정치적 원칙 등 국가별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5)-2 거시감독기관은 거시적, 총체적, 시스템적, 경제적인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134), 미시감독기관은 미시적, 개별적, 법률적, 회계적인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2.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광범위한 범주설정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세계적 금융규제 완화 및 국제화에 따른 은행 간 경쟁심화로 은행의 자산운용 전략이 고위험 고수익 추구로 변화해 간다. 1988년 BIS 산하 바젤 감독위원회는 바젤 I 을 제정하여 위험가중자산의 8%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러다 2004년 바젤위원회는 리스크관리 역량의 발달과 은행 간 격차로 인해 다양한 리스크 측정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바젤II를 제정하기에 이른다. 2005년 적용되었던 기존의 바젤II는 최저자본비율규제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과 시장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시장 감시가 핵심내용이었다. 그러나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일부 은행들의 BIS자본비율이 충분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리스크가 타 금융기관으로 전파되어 시스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과도한 자산 확대억제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기존 규제 체계를 개선하는 새로운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합의한다.¹⁷⁾

이렇게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바젤II를 개선하여 새로이 고안된 바젤III를 바젤II와 비교해볼 때 가장 큰 차이는 기존 자본의 개념에서 보통주 자본의 개념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에서 SIFI에 대하여 보통주자본을 1~3.5%의 자본을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는 규제를 두어 SIFI에 대한 글로벌금융규제기준을 새로이 추진하게 되었으며 신용등급과 무관한 회계상 명목금액 기준으로 자본을 부과하는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였다는 점과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유동성비율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바젤III의 규제에 의한 자

17) "Basel III" is a comprehensive set of reform measures, developed by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supervision and risk management of the banking sector." <http://www.bis.org/bcbs/basel3.htm> 참고

본규제는 2013년부터 적용되며 새로 추가된 유동성비율과 레버리지 비율은 유예기간을 두고 각각 2015년과 2018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바젤Ⅲ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규제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적인 금융규제 기준으로 거듭나게 된다.

3. 자본의 질,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

글로벌금융위기를 통해 신용손실과 감액은 유형 보통주자본을 구성하는 이익잉여금 계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가 간 자본의 정의도 상이하였고 시장에서 금융기관 간 자본의 질을 비교 평가하는 데 필요한 공시자료도 부족하였다는 점이 금번 위기를 통해 밝혀졌다. 그래서 이를 위해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주식회사가 아닌 은행의 경우에도 동등한 양질의 Tier1자본을 보유하도록 한다.

자본공제 항목은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통상 보통주자본에 대해 적용된다.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주자본에 해당하는 자본항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타 Tier1 자본은 후순위여야 하며, 배당 또는 이자는 비누적이이고 재량적인 지급이 가능하며, 만기나 상황유인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금리상향조정과 같은 특별조항을 통해 중도상환유인을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 증권 형태의 자본확충수단은 단계적으로 Tier 1자본에서 제외될 것이다.

Tier2자본(보완자본)에 대한 기준도 일치시킬 것이며, 시장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Tier3자본(만기 5년 미만 단기후순위채무)는 폐지한다. 이렇게 모든 자본요소 및 관련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시를 통해 시장규율을 제고하고 자본의 투명성도 개선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4. 위험인식 범위 확대

최근의 글로벌금융위기의 주요 교훈 중 하나는 자본규제체계의 리스크 인식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위기 중 주요 장부상 및 장부외(on sheet/off sheet on item) 파생관련 익스포저의 리스크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이 주요 불안정요인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7월 바젤감독위원회는 바젤Ⅱ체계의 핵심적인 부분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동 조치로 많은 국제영업이 활발한 은행의 주요 손실원천이었던 늘어날 것이며 규제강화조치는 다음과 같다. 12개월간 지속되는 심각한 금융스트레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는 stressed VaR144) 도입 및 필요자본규모를 산출한다. 은행계정 및 트레이딩계정상의 재유동화 상품에 대한 필요 자본규모를 상향조정한다.

또한 Pillar1(자본 및 리스크범위)와 Pillar3(공시)강화조치의 도입시한은 2011년 말 이며, Pillar2(감독기능강화)의 기준은 2009년 7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번 규제개혁에서는 은행의 파생거래, 환매약정 및 증권금융거래시 발생하는 거래상대방 신용익스포저에 대해 자본요구 수준을 강화하는 조치도 도입한다. 동조치는 이들 익스포저에 대한 자본부담을 증가시켜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중앙 청산소로 이전시키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시스템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바젤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개혁조치를 도입한다. (a) 향후 은행은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에 대한 자본요구량을 산정할 때 금융위기에 상황변수를 반영토록 한다. (b) 은행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발생하는 잠재적인 시가평가 손실에 대해서도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c) 담보관리 및 개시증거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d) 바젤위원회는 은행과 타금융기관간의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상호연계성에서 초래되는 시스템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청산소를 포함한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려는 지급결제위원회(BIS산하기관,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PSS) 및 금융증권감독기구(BIS산하기관,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의 노력을 지지한다. 또한 금융시스템 내 시스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바젤위원회는 비금융부문보다 금융기관간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한다. 이는 금융기관간 익스포저가 비금융부문의 익스포저에 비해 상호연계성이 높기 때문이다. (e) 바젤위원회는 상관리스크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한 거래 상대방 신용리스크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바젤위원회는 바젤II체계의 외부신용평가등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검토하였다. 외부등급 유동화 익스포저에 대한 은행의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신용리스크 경감 활동과 관련된 은행시스템의 경기순응성 증폭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본규제체계내 외부 신용등급 이용의 적격성 기준에 IOSCO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행동규범 원칙 중 핵심요소를 추가 적용한다.

5. 자본보전 및 경기대응 완충자본도입

이번위기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은행시스템의 장부상 및 장부외(on sheet/off sheet on item)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아시아금융 위기에서도 나타난

특징이었다. 은행부문은 위기가 가장 심각한 시기에 시장으로부터 레버리지 축소 압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자산가격의 하락이 증폭되고 손실증가->자산감소->신용가용성 위축의 악순환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하였다. ①평상시에 투명하며 독립적인 리스크 측정수단으로 리스크기반 수단을 보완함으로써 모형 리스크 및 측정 오류에 대한 추가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한다. ② 단순하고 투명하며 독립적인 리스크 측정수단으로 리스크기반 수단을 보완함으로써 모형 리스크 및 측정 오류에 대한 추가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레버리지 비율(149)은 회계기준 상의 차이를 조정하고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6. 경기순응성 완화 및 경기대응완충자본 확대

금융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는 은행시스템, 금융시장 및 경제시스템 전반을 통한 금융충격의 ‘경기순응성 증폭’이었다. 경기순응성을 증폭시키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데, 첫째, 시가평가대상 자산 및 만기보유 대출에 적용하는 회계기준. 둘째, 거래증거금 부과 관행. 셋째, 금융기관, 기업 및 소비자의 레버리지 증감 등이다.

바젤위원회는 이러한 경기순응적 요인들에 대응해 은행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바젤위원회는 앞서 논의된 레버리지비율과 더불어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호경기시 은행 부문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목표를 지닌 일련의 수단(최저자본규제의 과도한 경기순응성 완화, 보다 미래지향적인 충당금 적립 유도, 개별은행과 은행부문 전체가 위기시 활용 가능한 완충자본 적립, 신용확대가 과도한 시기에 은행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거시건전성 목표 달성)을 도입한다.

첫째, 최저자본규제의 경기순응성에 대해서는, 바젤Ⅱ체계는 규제자본의 리스크민감도를 제고하고 인식범위도 확대하였으나 복잡한 트레이딩 영업활동, 재유동화, 난외(off-balance sheet item)익스포저 등의 부문에서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포착하지 못 함에 따라 동 부문에서 경기순응성이 심하게 나타났다. 또한 바젤위원회는 신용 순환주기 전체에 걸쳐 바젤Ⅱ체계가 회원국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바젤위원회는 최저필요자본의 경기순응성이 감독당국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보다 크다고 판명되면 경기순응성을 축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고려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자본규제의 리스크민감도와 안정성 간의 균형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시 감독자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추가적인 수단들을 검토해

왔는데, 이러한 조치들에는 Pillar2(감독기능강화)을 통해 경기하락기의 은행 포트폴리오 부도 확률을 활용하여 내부등급법상 호황기의 낮은 부도확률을 수정하는 유럽감독자위원회의 접근법을 포함한다. 이에 관하여 영국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는 내부 등급법 이용시 은행의 부도확률모형 결과 값에 전 경기순환주기를 반영할 수 있는 승수를 적용함으로써 경기순응성이 없는 부도확률을 산출하는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미래지향적 충당금 적립에 대해서는, 바젤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통해 충당금 적립관행 강화를 도모한다. 예상손실(Expected loss, 이하 EL)에 근거한 충당금 적립방식으로 회계기준 변경을 지지하며, 바젤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이하 IASB)의 EL방식 도입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러한 EL방식으로서의 이행에 맞추어 바젤위원회는 관련감독지침을 개정 중에 있으며, 자본규제체계 내에서 충당금 적립 강화유인에 대해 검토 중이다.

셋째, 적정수준의 자본유지에 대해서는, 적정자본을 유지하고 위기 시에 사용될 수 있는 최저요구량 이상의 적정 완충자본을 적리보록 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금융위기 징후가 보일 때에 상당수 은행들은 재무상황이나 금융부문에 대한 전망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주식환매, 관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형태로 과도한 잉여금 배분을 지속하였다. 이는 배분 축소시 금융기관이 취약하다는 신호로 인식될 것을 우려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개별 은행과 금융부문 전체의 복원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바젤위원회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은행부문이 적정 완충자본을 유지하도록 감독당국에게 강력한 수단을 부여하는 자본규제체계를 도입하고 자본재확충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과도한 신용증가에 대해서는, 이번 금융위기과정에서 목격되었듯이 과도한 신용팽창기 이후 경기가 하락할 경우 은행부문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은행부문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국 실물경기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실물경기 하락이 다시 은행부문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호연계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신용팽창기에 은행부문이 완충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과도한 신용증가 자체를 억제하는 추가적인 효과도 볼 수 있다. 충당금적립제도는 예상손실에 대비해 은행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본관련 수단은 예상외손실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한다. 자본관련 수단 중에서 최저규제자본제도의 경기순환성 완화와 최저규제자본 이상으로 부가적인 완충자본을 적립하는 것은 별개로 추진된다.

결론적으로 신용거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독당국은 은행부문이 다수의 요인에 기인한 심각한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저규제자본이상의 완충자본을 적립할것을 기대한다.

7. 시스템리스크 및 상호연계성 완화를 위한 대응

경기순응성으로 인해 금융충격이 증폭되었다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간의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충격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전반으로 전파되었다.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은 최저기준 이상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바젤위원회와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 추가자본부과, 조건부자본 및 손실부담채권을 포함한 통합적인 규제수단을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바젤위원회는 국제적 수준에서 질적 양적 지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식별방법을 개발 중이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과 연관된 리스크 또는 외부성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 수단도 검토 중에 있다.

글로벌 금융기관의 개별 익스포져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는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다음의 자본규제수단은 시스템리스크와 상호연계성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히 살펴보면,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중앙청산소 이용 은행에 대한 자본부담 완화 유인을 제공하는 것, 트레이딩 및 파생거래, 복잡한 유동화 및 장부 외 익스포져(구조화투자 같은)에 대해 높은 필요자본을 부과하는 것, 금융기관 간 익스포져에 대한 높은 필요자본을 부과하는 것, 마지막으로 장기 운용자산에 대한 필요자금을 단기 은행 간 자금조달수단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동성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IV.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대응방안

최근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가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다시피 글로벌 금융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그 파급력이 그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그 파급력이 미친다는 것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사태로 목격하였다. 또한 금융위기가 그 산업 자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금융위기 한 번이 커다란 경제공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젤Ⅲ 자본 및 유동성규제는 이러한 글로벌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의 자본건전성과 위기 시에도 유동성 확보를 통해 위기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 마련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바젤Ⅲ를 넘어서 바젤Ⅲ 규제보다 강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미국의 금융개혁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를 통해 상업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은행의 높은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통적인 유니버설뱅크시스템인 유럽은행들도 이러한 투자은행의 투자위험속성으로 인한 상업은행의 건전성 위협과 위기 파급력을 차단하기 위해 분리정책을 고안하고 있으나, 유럽에서 일어난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의 원인이 유니버설뱅크시스템이 아니었기에 그다지 미국의 금융개혁법과 같은 강력한 금융규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젤감독위원회가 자본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동성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바젤Ⅱ를 개편하여 바젤Ⅲ 규제개혁을 내어놓았고, 27개 회원국에 이러한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또한 2013년 12월 1일 바젤Ⅲ 자본규제 부문에 대한 규제사안을 도입할 예정에 있음을 확정하였고, 바젤Ⅲ 국제기준에 맞추어 은행업감독규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바젤Ⅲ 규제개혁의 내용은 글로벌금융시대인 경제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국가라면 외면할 수 없는 ‘글로벌 금융의 신뢰이자 약속’이 되어버렸다. 또한 국제적 규제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은행의 자본건전성이 강화되고, 유동성자본을 확충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과열과 불안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 즉 SIFI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규모가 큰 대형은행의 위기에 따른 악영향을 줄이거나 방지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본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기에 대한 보험적 성격을 띠는 은행세 도입에도 각국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위기에 재발방지와 혹시나 발생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재유동화증권과 트레이딩계정에 따른 공격적인 투자방식으로 빠르게 성장해 온 미국의 글로벌 투자회사들이 이러한 강력한 규제에 수긍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먼 사태 이후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상업은행에 합병되거나 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는 등 강력한 금융규제개혁을 받아들이는 모양이다. 이 과정에서 대형 투자은행들은 시장에서 사라졌지만 은행과 증권의 겸업화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상업은행의 본 업무에서 창출되는 수익보다 상업은행으로 합병되거나 인가를 취득한 투자은행들의 투자업무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은행의 본연의 업무를 통해서 수익이 더 이상 창출될 방법이 없자,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은행 업무의 투자대비 높은 수익률을 포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이렇게 회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금융회사의 수익 극대화가 경

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근 미국의 글로벌금융위기를 통해 목격하였다. 그러하기에 대형글로벌금융회사에 맞선 미국의 금융개혁법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선진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글로벌금융회사의 무분별한 투자방식과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금융위기의 파편이 오히려 한창 금융산업이 성장추세에 있는 신흥국들에게 있어서는 바젤Ⅲ 글로벌 금융규제가 산업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국가별로 금융산업의 규모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자본 및 유동성 규제기준은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은행이면 일정한 비율의 규제기준을 맞추어야 하고, SIFI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의 자본과유동성 비율을 요구하고 있지만, SIFI를 제외한 은행의 범주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수치는 강력한 규제에 의한 경제성장의 폐해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반은행에 있어서도 자본력과 규모에 따라 차등한 등급을 새로이 작성하는 ‘규제기준차등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산업의 종사자들은 글로벌 금융규제 하에서 새롭게 안정적인 수익창출에 대해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바젤Ⅲ 도입에 대한 국내의 반응은 금융감독기관에 있어서는 규제의 강화가 건전한 금융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규제감독을 받는 국내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상업은행의 업무를 통한 수익창출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자본 및 유동성까지 확충하라고 하니 고충이 여간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2013년 12월 1일에 도입되는 자본 부문에 관한 규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내은행들이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유동성부문에 관한 규제인데, NSFR 100%준수를 위해서는 각각 총자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출의 만기를 1년 이하로, 예수금의 만기는 1년 이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데, 장기주택담보대출이 대출의 30%정보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예수금의 85%가 만기 1년 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단시일 내에 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SFR이 현재로서는 규제수준에 다소 미달하지만 2015년부터 점차적으로 도입하여 2019년에 완전히 도입됨에 따라 기간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금융규제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는 어느 국가도 피할 수 없는 국제적 추세가 되었다. 그러기에 자본을 강화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각고의 노력은 필수과제가 되었으므로, 금융회사의 성장속도는 잠시 더디겠지만 건전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표준화된 모든 금융과생상품거래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하도록 하는 규제에 있어서는 장외과생상품거래에 대한 금융불안과 위험요소를 잠식시키고 건전한 거래를 유도함에 따라 긍정적인 효력이 예상되므로 바젤Ⅲ규제개혁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한다.

금융개혁법의 주요내용인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조항은 한창 은행대형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도한 은행규제개혁이 오히려 국내 금융산업 성장의 제약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무엇보다도 선진국의 글로벌 금융회사와 규모가 다른 신흥국 금융회사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러한 획일적인 국제기준이 규제기준을 강화함 있어서 지나친 규제기준이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금융위기와 같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의 미비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오히려 규제를 뛰어넘은 지나친 국제적 규제로 작용하여 규제의 효율성을 낮추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선진국의 초대형화금융회사의 규모 맞추어 일괄 적용되는 바젤Ⅲ 및 금융개혁법은 무조건적으로 국제규제기준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신흥국에 있어서는 어느 부문에서는 국제기준을 수용하고, 어느 부문에서는 자국의 경제상황과 현실에 맞는 규제기준을 이어가는 ‘이원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시사점

바젤Ⅲ 도입시 국내은행들은 자본금 및 레버리지 비율 규제와 관련하여 대응역량을 보유한 상황이나 일정 수준의 충격을 예상된다. 은행의 추가 자본금 확보와 자산 축소의 부담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가 자본금 요건 강화로 은행 수익성이 일정 수준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유동성규제부문은 모든 국내은행의 수준으로는 단기유동성비율(LCR) 및 중장기유동성비율(NSFR)규제 수준 100%를 준수할 수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젤감독위원회는 글로벌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유동성규제 도입시기와 범위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유동성규제 도입시한을 2015년에서 2019년 4월로 유예하였다. 이에 따라 단기유동성비율(LCR)은 2015년까지 60%를 충족해야 하며 이후 4년 동안 매년 10%p씩 높아져 2019년부터는 기존안과 같은 100%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단기유동성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중장기유동성비율(NSFR)도 역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될 수 있을지라도 100%라는 수치측면에 있어서는 바젤Ⅲ원안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어찌되었든 유동성규제가 적용될 경우에 은행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유동성 자산이 증가하여 은행의 비용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여신축소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점 등 관련감독기관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의 대응방안으로 현재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리스크 전체 총량은 축소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V. 결론

글로벌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자본건전성 강화 및 유동성 강화를 위해 탄생된 바젤Ⅲ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새로이 고안된 바젤Ⅲ는 자본규제부문, 레버리지규제부문, 유동성 규제 부문으로 구분된다.

첫째, 자본규제부문에 있어서의 큰 변화는 자기자본비율에서 산출되는 요소로서 보통주 자본의 요소를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보통주는 우선주에 비해 투기적인 투자방식을 제고하고, 은행의 건전하고 투명한 자본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본의 종류별로 인정요건을 설정하고, 자본공제항목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회계상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동일비율 규제였던 기존의 바젤Ⅱ 자기자본비율에 있어서 SIFI에 대한 차등규제를 둬으로써 이전에 비해 효율적인 규제비율을 설정하고 있다. 두 번째 레버리지규제 부문에 있어서는 신용등급에 기반한 자기자본만을 규제하였던 이전에 비해 회계상 명목금액 기준 자본비율을 규제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유동성규제부문에 있어서는 이전에는 계량적인 유동성비율 규제가 없었으나, 현행 바젤Ⅲ에서는 단기유동성비율과 중장기유동성비율을 계량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바젤Ⅲ는 이전의 규제부문에 비하여 더욱 강화된 국제금융규제기준으로 새로이 탄생되었지만, 이러한 일괄적인 국제기준이 연혁적, 문화적, 정치적인 사안이 상이한 여러 국가들에게 있어서 일괄적인 규제가 적용되어 효율적인 방책으로 대두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된다.

바젤Ⅲ도입에 앞서 가장 먼저 상기하고 있어야 할 점은 이러한 국제규제기준이 자국의 금융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규제 도입에 있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가 자국의 금융산업의 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참 고 문 헌

- 고동원, 「금융규제와 법」, 박영사, 2008년
- 이장영, 「바젤Ⅲ와 리스크관리」, 박영사, 2011년
-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0판」, 박영사, 2012년
- 임재연, 「자본시장통합법」, 박영사, 2013년
- 정신동, 「바젤Ⅲ와 글로벌금융규제의 개혁」, 선, 2011년
- 최준선, 「국제거래법 제7판」, 삼영사, 2012년
- 김국중, “바젤Ⅱ시행에 따른 국내은행 영향 및 기업의 대응방안”, 금융연구 2008년
- 김남우, “2011년 미국의 금융개혁법 제정과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한국 법제연구원 2011년
- 김서경, “한국경제의 외환위기 극복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시사점”, 사회 과학논총 제29집 2009년
- 김연준,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유로 존 주식시장의 충격에 관한 연구”, 유럽 연구 제20권 2호
- 김흥기, “한국의 외환위기 원인, 전개과정 및 대책”, 기업 경영 연구, 1999년
- 김흥기, “미국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금융 법연구 제7권 2호, 2011년
- 노진호, 이종수, “선진국 은행 사업 구조 및 글로벌 금융 규제의 변화 추세와 시사점”, 월간 하나 금융 10월호, 2010년
- 노희진, “국내금융시스템과 금융규제의 향후 방향과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 KRXmarket, 2011년
- 서병호 “바젤Ⅲ유동성규제의 국내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주간 금융 브리프, 2010년
- 심지홍, “외환위기와 한국경제 패러다임 변화”, 경상 논총 제29권 1호, 2011년
- 윤건용, “바젤Ⅲ(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NHERI리포트115
- 장의태,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과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위기 대비 효과”, 국제 경제 연구제17권1호, 2011년
- 전용덕, “바젤Ⅲ협약, 금융제도 안정에 기여할까”, 자유 기업원 CFEview point 2010년
- 최창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변동과 수출가격”,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통상 정보학회, 2011년
- 최창열,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e-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제11권 제4호, 2010년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e Change of Financial Industrial for strengthening Global Financial Control*

Hyung-Bum Ham** · Chang-Yeoul Choi***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riticism against the integr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proposed new financial regulations such as Basel III. These systems are expected to have impacts multilaterally on management and structure of mid- and long-term financial industry. It is also believed that financial institutions will inevitably review business model to respond to these enhanced regulations. The ongoing global financial regulation pursues regulation scope extension, introduction of global regulatory capital system, introduction of global liquidity, etc.

As for quantitative index,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is promoting QIS which is discussed mainly on implementation time from the juridical point of view.

This study aims to present domestic banking industry's structural changes depending on regulation enhancement of foreign countries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and suggest strategy that improves competitiveness of products.

Looking at the research result, global financial regulation requires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s through treaties but it shows negative time center around banks. Furthermore, it is also pointed out financially advanced countries' passive attitude on regulation enhancement is problem. Therefore, regulations differentiated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dualistic regulations on financial industry, participation of advanced nations, etc are the postulation to change the structure of financial industry.

Key Words : Financial Crisis, Global Financial Regulation, Financial Policy, Financial & Trade, Financial Structural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Seokyeong University in 2012.

** Professor, Seokyeong University(jhbham@hanmail.net First Author)

*** Treatment Professor, Seokyeong University(ccy666@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